##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

 2015.
 9. 18.
 제정

 2019.
 4. 4.
 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이화여자대학교 학칙」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 제39조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학생의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6.6.16.)
- 제2조(성적평가 및 성적분포) 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「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」제34조에 따라 교수자율평가를 적용한다. 교수자율평가 방법은 상대평가, 절대평가, 기타로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에서 수강하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교환·방문학생 및 대학원과 정생과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상대평가 기준이 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③ 성적은 교과목별, 분반별로 평가한다. 다만, 교과목의 학수번호, 수업진행방식, 담당교수 등이 동일하여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분반을 통합하여 성적평가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9.4.4.]

- 제3조(평균평점의 산출) 성적 평균평점의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성적점을 곱한 성적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 다만, 성적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과목의 학점은 신청학점에서 제외한다.
- 제4조(성적의 환산) 제3조의 평균평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성적의 환산 기준과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5조(휴학생 및 자퇴생의 성적처리) ① 개강 후 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
  - ② 개강 후 학칙 제30조에 의하여 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5조의2(결시신청) ① 학생이 학칙 제40조제2항의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개시일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. 부 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결시자에 대해 추가시험을 실시하거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.
  - ③ 결시자의 추가시험 등의 성적처리는 성적입력마감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.
  - ④ 결시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질병으로 인한 경우: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에 준하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

##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

- 2.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
- 3. 국제대회, 훈련,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: 주관 기관장명의 증빙서류 (개정 2017.12.14.)
- 4. 그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: 해당 증빙서류 (개정 2017.12.14.)

[본조신설 2016.6.16.]

- 제6조(학점의 인정) ①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, 해당 교과목은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학칙 제39조의 성적점은 부여하지 않으며, 성적인정 및 표기방식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39조에 따른 성적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본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- 제7조(성적열람 및 성적이의신청) ① 매학기 성적은 교과목별 담당교수의 성적입력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이 직접 열람하여 확인한다.
  - ② 제1항의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신청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, 기간의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 다만, 학칙시행세칙 제36조에 의한 성적정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-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성적산출근거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착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적팀에 성적정정을 신청하고 직접 정정 입력할 수 있다.
  - 1. 기재착오
  - 2. 입력착오
  - 3. 자료착오
  - 4. 계산착오
  - 5. 채점착오
  - 6. 성명착오
  - 7. 기타 행정적인 착오

[본조신설 2015.12.29.]

제8조(성적 산출근거 관리) 담당교수는 성적산출근거자료(문제지, 답안지, 각종 과제물 등)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출결이 표기된 출석부는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5.12.29., 2017.12.14., 2019.4.4.)

부칙 (2015.9.18. 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5.12.29. 개정)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6.16. 개정)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12.14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4.4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 출석부 보관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생산 기록물부터 적용하고 그 전 기록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